

#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명 : DB 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제 2 호 [주식] (펀드코드: 29787)

2. 변경 시행일 : 2024.09.30(월)

3. 변경 내용 요약 :

-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
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수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) 및 결산일자 업데이트
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2024.1.1 시행)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(2024.3.1. 시행)

4.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(이전 생략)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」에 따라 <a href="#"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a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(중전과 동일)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「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」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에 따라 <a href="#"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</a> , 특히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에 따라 <a href="#"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</a> .	6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에 따라 <a href="#">보호되지 아니하며</a> , 특히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에 따라 <a href="#">보호되지 않습니다</a> .
<b>요약정보</b>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(이전 생략)집합투자증권은 「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」에 따라 <a href="#"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a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이하 생략)	(중전과 동일)집합투자증권은 「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」에 따라 <a href="#">보호되지 않는</a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중전과 동일)
투자비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」에 따라 <a href="#"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a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」에 따라 <a href="#">보호되지 않는</a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에 따라 <a href="#"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</a>	원금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a href="#">예금자보호법</a> 에 따라 <a href="#">보호되지 아니하며</a> 원본을 보장

		<b>하</b> 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(이하 생략)	하지 않습니다. (종전과 동일)
<b>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주식 추가	-	주2) 법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"법"이 라 지칭합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추가	-	-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-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(수 익률 변동성 기준 변경) 및 결산일 자 업데이트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 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(2024.1.1 시행) 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(2024.3.1. 시행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 한 규정 개정사항 반 영	(이전 생략)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 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 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b>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 를 받지 못합니다.</b>	(종전과 동일) 또한, 이 투자신탁 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b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 호되지 않습니다.</b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 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 준 변경(수익률 변동 성 기준 변경)	※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: <b>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이란 투자기간 동 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 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 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, 투자신탁 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. 수익률 변동성 (표준편차)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, 값이 작을 수록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습니 다.</b>  <b>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 : 16.37% (2023.09.14기준)</b>  -	※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: <b>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 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 의 절대값에 <math>\sqrt{250}</math> )를 곱해 산출한 97.5% VaR 모형을 사용합니다.</b>  <b>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 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) : 35.62% (2024.09.14기준)</b>  <b>&lt;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&gt;</b>  2. “중위험자산”은 <b>채권(BBB-등급 이상), CP(A3등급 이상),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</b> 및 이러한 자산 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

		<p>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 <p>4.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<u>집합투자기구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</u>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. 단, 수익률의 <u>표준편차</u>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·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(ELF, 레버리지펀드, 인버스펀드, 부동산펀드 등)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p><u>(붙임1)표준편차 기준표</u></p>	<p>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 <p>3. “저위험자산”은 국공채, 지방채, 회사채(A-등급 이상), CP(A2-등급 이상), <u>법 제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</u>, 현금성 자산 및 이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.</p> <p>4.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결산일 이전 3년간 <u>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토대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에 따라</u>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. 단, 수익률의 <u>VaR</u>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·복잡한 특수집합투자기구(ELF, 레버리지펀드, 인버스펀드, 부동산펀드 등)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p> <p><u>(붙임2)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(97.5% VaR 모형* 사용)</u></p> <p><u>상기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DB 자산 운용(주)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표준투자권유준칙 ‘II.위험등급 산정의 일반원칙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. 상세 내용은 ‘표준투자권유준칙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<신설>	<u>(붙임3)(표)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- 분리과세한도 <u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u> <u>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</u>	- 분리과세한도 <u>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u> <u>연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(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</u>

		수령분부터 적용)	수령분부터 적용)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업데이트	-	결산일자 업데이트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	업데이트	-	최근일자 업데이트

**(붙임1)표준편차 기준표**

등급	1등급 (매우 높은위험)	2등급 (높은위험)	3등급 (다소 높은위험)	4등급 (보통위험)	5등급 (낮은위험)	6등급 (매우 낮은위험)
표준편차	25%초과	15%초과 25%이하	10%초과 15%이하	5%초과 10%이하	0.5%초과 5%이하	0.5%이하

**(붙임2)시장위험 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\* 사용)**

등급	1등급 (매우 높은위험)	2등급 (높은위험)	3등급 (다소 높은위험)	4등급 (보통위험)	5등급 (낮은위험)	6등급 (매우 낮은위험)
97.5% VaR	50% 초과	50% 이하	30% 이하	20% 이하	10% 이하	1% 이하

\*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( $\sqrt{250}$ )를 곱해 산출

**(붙임3)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**

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허용
			○